



환경 법 위·반·사·례

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·마모·훼손 방지

대기방지시설의 부식·마로로 인하여 오염 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·기계류의 고장·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됨.

사례 1

- 위반내용 :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·기구류의 훼손을 방지
- 관련 법 :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
- 조치사항
 - 과태료(100만원이하), 경고(2차위반시 조업정지 10일)
- 위반사례
 - 00업소는 도금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배출시설인 니켈도금시설($7.87\text{m}^3/\text{1}\text{h}$)에서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($1,400\text{m}^3/\text{분 1}$)로 연결된 닉트가 훼손되어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비산 등 집진효율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.

사례 2

- 위반내용 : 대기방지시설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
- 관련 법 :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

• 조치사항

- 과태료(100만원이하), 경고(2차위반시 조업정지 10일)

• 위반사례

- 00업소는 00제조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도장시설($5.5\text{m}^3/\text{1}\text{h}$)을 가동하면서, 동시 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흡입·처리하는 방지시설(여과에 의한 시설 $450\text{m}^3/\text{분 1}$ 대)의 송풍기 연결부분이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나 훼손된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.

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

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함.

사례 3

- 위반내용 : 자가측정 미이행
- 관련 법 :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
- 조치사항
 - 고발(200만원 이하의 벌금), 경고(2차위반시 경고, 3차 위반시 조업정지 5일)
- 위반사례
 - (주)00제조업체는 2002년 0월 0일부터 2003년 0월 0일 점검 당시까지 건조시설($250\text{m}^3/\text{일}$)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(여

과집진시설 300m³/일)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.

로 생각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음.

사례 4

- 위반내용 : 자가측정 미이행
- 관련 법 :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
- 조치사항
 - 200만원이하 벌금 (동법제57조제1의3)
 - 1, 2차경고, 3차 조업정지 5일, 4차 조업정지 10일
- 위반사례
 - 00은 식품가공업을 하는 업체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자가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로를 설치·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는 하였으나 동 시설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는 것을 몰라 2002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을 확인함.

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

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함.

사례 5

- 위반내용 :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
- 관련 법 :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
- 조치사항
 - 과태료(100만원이하), 경고(2차위반시 경고, 3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)
- 위반사례
 - 00석재(주)는 대리석을 생산하는 업소로서 동 업소의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경우는 방지시설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

사례 6

- 위반내용 :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기록
- 관련 법 :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
- 조치사항
 - 과태료(100만원이하), 경고(2차위반시 경고, 3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)
- 위반사례
 - 00(주)는 과자류, 빵을 제조하는 업소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면서 폐수배출유량 및 지하수유량을 적산유량계 지침과 다르게 허위기록하였음.

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

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,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.

사례 7

- 위반내용 :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
- 관련 법 :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
- 조치사항
 - 고발(3년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)
 -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(폐기물관리법 제45조)
- 위반사례
 - (주)00업소에서는 2003년 0월 0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폐윤활유 500kg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차량으로 무단 투기하여 주변하천을 오염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.